

[]지 정
검사기관 []재 지 정 신청서
[]변경지정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검사기관의 종류 []전문 []공인			
	일일 검사처리 가능 용기 수량(용기 전문검사기관에 한정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기관의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사인력보유현황 1부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4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2만원
------	---	----------------

처리절차

